

#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기덕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5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5월 22일

발 의 자 : 김기덕, 김화숙, 이경선, 박상구,  
이병도, 김정태, 김제리, 이정인,  
김소양, 황규복, 한기영, 이동현  
의원 (12명)

## 1. 제안 이유

-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'19. 7. 1.부터 기존 '장애등급제'가 폐지되고 '장애정도' 기준이 도입되어 등록 장애인 구분을 기존 6등급 구분에서 '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'(기존 1~3등급)와 '심하지 않은 장애'(기존 4~6등급)의 2단계 구분으로 변경됨.
- 이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입장료 감면 규정에 새로 도입된 '장애정도'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 골자

- 가. 공원 입장료 감면 규정에 인용된 장애등급(1급에서 3급까지)을 '장애정도'로 표현을 수정함(안 제20조제1항제2호).

## 3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제2호 중 “1급에서 3급까지 중증 장애인”을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요금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6세 미만의 사람, 65세 이상의 사람과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1급에서 3급까지 중증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)</p> <p>3. ~ 7. (생 략)</p>	<p>제20조(요금의 감면) ①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6세 미만의 사람, 65세 이상의 사람과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)</p> <p>3. ~ 7. (현행과 같음)</p>